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 안사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4 / 2 / 21 통권 1663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용인술을 뛰어넘은 파트너십

###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도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2024년 복지세정의 혜택이 더 커집니다
- 공익법인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 중소형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지급 등 다수의 자금 유용 사례발견
- M&A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누락한 경우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신고라도 감액 경정청구 가능함

(p.11)

###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 <외부회계감사대상에게 실행가능 · 불가능한업무비교>

개념범위	불가능 업무범위	가능업무범위와 조건
회계기록, 재무제표 작성	독립성 침해, 불가능	분개, 자문도 안됨
내부감사역할대행	독립성 침해, 불가능	내부감사 취임도 안됨
재무정보체계 구축	독립성 침해, 불가능	S/W 및 H/W 컨설팅 모두 안됨
매도, 매수자문	독립성 침해, 불가능	매도 · 매수 아닌, 증자 · 감자 등의 자문은 가능
기업가치평가	독립성 침해, 불가능	매도 · 매수 아닌, 증자 · 유상감자용 평가는 가능
인사조직자문	독립성 침해, 불가능	경영과 회계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어 안됨
자금조달 알선중개	독립성 침해, 불가능	재무제표에 본질적 영향 있어 안됨
민사 · 형사 소송자문	독립성 침해, 불가능	재무계정과목과 재무제표시 본질 영향을 끼쳐 안됨
세무조정 · 세무대리	독립성 침해 열거안됨(실행 가능)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함(윤리기준 : 독립성 위협없음) 가능(내부감사 동의)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290.178)
조세불복 · 세무조사 등	독립성 침해 열거안됨(실행가능)	가능(이해상충 소지 없음)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290.180)

(안사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중공인회계사작성)

안사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63호 / 주간 8호

2024. 2. 21.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 FAX: (02) 718-8565

##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외부회계감사 대상에게 실행 가능한 업무 비교	표지
CEO에세이	용인술을 뛰어넘은 파트너십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 기부금 관련문의 - 심리상담 중개업 창업관련 세무회계 - 업무용승용차	4 5
눈에맞는 절세미인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도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6
매일 절세재무요점	- ISA 세제혜택 강화 내용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8 9
직장인 Survival	저항심리를 줄여라	10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법규소득-943, 2023.05.17) - 일부 거주하고 일부 임대등록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부동산-3960, 2023.03.10)	11 12
세정 뉴스와 해설	부가세 세정지원 소상공인...법인 · 소득세 신고도 3개월 납부연장	13
마케팅 Tax consulting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누락한 경우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신고라도 감액 경정청구 가능함	11
세무정보	- 2024년 복지세정의 혜택이 더 커집니다 - 공익법인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 2024년 국제행정 운영방안	14 19 23
회계정보	- 중소기업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지급 등 다수의 자금유용 사례발견 - M&A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33 45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3

# 용인술을 뛰어넘은 파트너십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외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부도(富道) 1단은 근(勤), 2단은 검(儉), 3단은 축(蓄), 4단은 업(業), 부도 5단은 유(柔), 6단은 인(忍), 부도 7단은 ‘더불어 여(與)’다. 여인(與人)이다.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다. 여인정신(與人精神)이다. 바로 파트너십이다. 돈을 벌기 전에 사람을 얻어야 한다. 큰 돈은 더욱 그렇다.

프로는 사람을 소중히 하고 아마추어는 돈을 소중히 한다. “정사를 함이란 사람을 얻는 것이다.(爲政 在於得人 위정 재어득인)”공자 말씀이다. “부를 얻는다는 것은 곧 사람을 얻는 것(爲得富 在於得人 위득부 재어득인)”이라는 뜻이다.

용인술(用人術)은 말 그대로 사람을 쓰는 기술이다. 거기에는 사람을 도구라고 여기는 철학이 내재해 있다. 그래서 용인술은 제왕의 것이다. 권위주의 시대의 것이다. 조직폭력배 두목의 것이다.(이해익저 ‘한국CEO의 조건’)

상당수 한국의 대표적 재벌 창업자들이 바로 용인술의 대가 소리를 들었다. 사람을 사람 대접하지 않고 주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여겼다. 또 사람 스스로도 그러려니 하고 부지불식간 노예화 되어갔다.

이제 생산의 원천은 토지나 설비 그리고 돈보다도 사람인 세상이 되었다. 피터 드러커에 의하면 ‘60kg의 몸보다 4kg의 머리로 일하는 시대’가 되었다. 특히 창조적 두뇌에 따라 판가름이 나는 세상이 되었다. 단순 반복적인 일에 절은 사람, 열심히 노력해서 박사나 교수가 되었거나 자격증이 많아도 앵무새처럼 흉내나 내고 베끼는 사람은 필요 없는 세상이다. 횡설수설 초점을 흐리고 떠드는 사람, 머릿수나 헤아리는 데 이골 난 군사 문화에 젖은 화이트칼라는 이제 중요한 자가 아니다.

금융계의 신화적 인물인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의 독특한 인재관이다. 자격증 많은 인재를 꺼린다. 도전적이거나 창조적이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도 상당수 CEO들은 노예 같은 사람을 끼고 돌기 일수다.

한국의 대표적 기업에서 있었던 사례다. 월급쟁이로 부회장까지 오른 그가 받는 연봉은 200

억 원을 넘었다. 만인이 부러워했다. 그런데 그것은 오너의 비자금 마련을 위한 방편임이 들어났다. 연봉으로 받은 돈의 상당부분을 남모르게 오너에게 되바쳤다. 오너의 비자금 사건이 특검수사에 오르면서 세상에 알려진 사건이었다.

헤드 헌팅(Head Hynting). 헤드는 중요한 인재를 뜻한다. 헌팅이란 사냥이다. 가만히 생각하면 맹랑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인재를 사냥하다니...

유비가 제갈량과 함께 하려고 노력한 삼고초려는 못할망정 인재사냥은 너무나 끔찍하다. 이제 용인술은 가라. 여인정신(輿人精神)이 답이다. 그게 바로 파트너십이다.

마우쩌뚱에게는 저우언라이가 파트너였고 빌 게이츠에게는 스티브 발머가 동반자다. 드골에게는 앙드레 말로가 있었듯이 버크셔 헤밍웨이의 워렌 버핏에게는 99세로 11월28일에 소천한 평생 파트너 고 찰스 멩거가 있었다. 파트너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역사가 가르쳐주는 지혜는 명쾌하다. “겸손하라! 욕심을 버리고 더 큰 꿈을 가져라! 나누라! 그래야 헌심(獻心)과 헌신(獻身)을 얻을 수 있다.”

대통령의 파트너는 누구이고 당신회사 CEO의 파트너는 누구인가?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2월 8일 (목)	2월 13일 (월)	2월 14일 (화)	2월 15일 (목)
미 달 러 (USD)	1325.30	1327.20	1328.40	1336.90
일 본 엔 (JPY)	895.20	888.80	882.04	888.48
영 국 파 운 드 (GBP)	1673.59	1675.92	1672.72	1680.02
캐 나 다 달 러 (CAD)	984.47	986.62	979.10	987.33
홍 콩 달 러 (HKD)	169.50	169.77	169.88	170.99
중 국 원 (CNH)	184.13	184.20	183.93	185.09
유 로 화 (EUR)	1427.94	1429.66	1422.78	1434.49
호 주 달 러 (AUD)	864.49	866.60	857.15	868.32
싱 가 폴 달 러 (SGD)	986.56	986.88	983.20	991.80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78.37	278.53	278.72	279.34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Q**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계산 관련 질의 드립니다.  
 당사의 과점주주 지분율은 설립시 87% 그리고 그 이후 매년 → 80% → 40% → 47% → 54% → 92% → 100%로 변경되었습니다. 설립시 간주취득세 해당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초 지분율 87%를 초과하는 92%년도에 5%를 납부하고  
 다음연도에 8%를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요?  
 일반주주였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되는 54%연도는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요?

**A** 과점주주이다가 주식의 양도 등으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증가분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5%와 8%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기부금 관련문의

**Q** 펜데믹 이후 많은 기관에서 마스크 기부를 받아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본원에서도 현물(환자 및 직원용 마스크)을 대량 기부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본원은 학교법인 산하 의료기관으로서, 시설/교육/연구일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보고, 환자지원 을 위한 기부일 경우에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1. 기부금 처리 가능 여부(법정 or 지정)  
 2. 기부금 처리가 가능할 시 기부채납원 상 가액은 거래명세서 등의 가액으로 처리해야할지 문의를 드립니다.

**A** 현물을 기부금으로 받은 경우 기부금처리가 가능하며, 시설비나 연구비 목적의 기부금이 아니므로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현물의 경우 기부자가 구입한 시가나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심리상담 중개업 창업관련 세무회계

- Q**
1. 사업모델 : 고객과 상담사를 앱에서 중개해주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업이며, 상담사는 고객과 전화로 심리상담해 줌, 고객은 돈을 미리 자기 계정에 충전 해놓고 상담할 때마다 이용금액을 차감하고 회사는 중개수수료를 공제하고 차액을 상담사에게 지급함
  2. 심리상담업은 면세사업인지? , 중개수수료는 과세사업인지? / 회사가 상담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음. 즉 , 프리랜서 임
  3. 매출인식: (예시) 심리상담료 : 10, 000원일 경우 / 상담사 매출 10,000원, 회사 매출 중개수수료 2,200원 (vat포함) / 상담사에 지급할 금액 : 7,800원
  4. 상담사 상담료 지급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의무자 : 소득구분 : 사업소득 해당하는지, 3.3% 공제 , 원천징수의무자 : 중개업하는 회사인지? / 대부분상담사는 프리랜서임.

- A**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인생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되므로 심리상담도 인생상담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가 된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중개수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입니다.
  2. 귀사가 단순 중개만 하는 경우라면 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을 인식하여야 하며, 상담료 전체에 대해 상담사가 매출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귀사는 단순중개이므로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업무용승용차

- Q**
- 귀속 2020년도에는 복식부기의무자였어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을 했구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금액도 있습니다.  
귀속 2021년도에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면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을 안해도 되는 상황인데 2020년도에 넘어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 처리를 어떻게 해야될지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
-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장부작성하셔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에 대해 한도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로 작성하시는 경우 이월액에 대해 별도의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로부터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도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기업에서 부가가치세 관련 실무를 처리하다 보면 그 판단이 어려운 거래들이 생기게 마련인데,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 용역을 공급받거나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등이 이러한 거래에 해당된다.

즉, 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거래들은 실무자들을 혼란에 빠뜨려 잘못된 신고납부를 하게 하기도 한다.

실제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발생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 적용 안됨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후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후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일반 경리실무자들은 거래상대방, 즉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가가치가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기만 하면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기가 쉽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제3호는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 ·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함을 알고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 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수취하면 되지만,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까?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용역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거래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 전환하도록 요구하고 거래를 하여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 서삼46015-10727, 2001.11.23.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추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면세사업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간이과세자와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돼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서삼-1505, 2007.05.16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 징수할 수 없는 것임.

또한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월

#### ISA 세제혜택 강화 내용

	현행	개정
납입한도	연 2000만원, 총 1억원	연 4000만원, 총 2억원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
가입대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불가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허용 (비과세 대신 15.4% 분리과세 혜택 적용)

### 화

#### 기존 ISA 유형별 특징

유형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투자 가능 상품	국내 상장주식, 국내 채권, 펀드, ETF, 상장형주식증권, 파생결합증권/사채, ETN, RP(환매조건부채권)	리츠, ETF, 상장형주식증권, ETN, 펀드, 파생결합증권/사채, 예금, RP	펀드, ETF 등
투자 방법	투자자가 직접 투자상품 선택		투자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로 일임 운용
수수료	상품별 수수료 및 보수 상이	상품별/증권사별 신탁보수 상이	증권사별 일일수수료 상이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등 및 비상장주식등 *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 회원권, 특정 주식,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촉권
파생상품	국내 · 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주식워런증권(ELW) 국의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다주택자 종과세 환급 대상자 기준

① 취득일*	2009년 3월 16일 ~ 2012년 12월 31일
② 양도일*	2018년 4월 1일 이후
③ 다주택자 종과세를 적용 받은 자	

\* 취득일, 양도일은 잔금일 · 등기일 등 거래종결일



## 저항심리를 줄여라

상대방이 강하게 설득해 오면 오히려 마음속에 저항감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오기로라도 설득당하고 싶지 않다'는 완강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런 저항심리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일방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할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이다.

사내회의에서도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지시만 내리면 듣는 사람은 저항감이 생긴다. 그 자리에서 반론하지 못하더라도, 회의에서 정한 방침을 따르지 않거나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업무를 게을리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일방적으로 방침을 전달하기보다는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 하고 싶은 말을 실컷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저항감이 완화된다.

# 최신 판례 예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법규소독-943, 2023.05.17

## 질 의

- 질의인은 '22.00.00.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으나, '22.00.00.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도매 및 소매업/◇◇◇"으로 업종정정을 하였음
- \* 질의인은 당초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업종을 착오 신청한 것이라고 함

## 질의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과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서로 다른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상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 따른 대상업종 해당여부의 판단기준

## 회 신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Marketing Tax consulting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누락한 경우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신고라도 감액 경정청구 가능함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함

부가가치세과-182, 2023.03.08

## 질 의

-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 누락 시, 부가가치세법상 신고기간별 경정청구 가능 여부

##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가입자가 최소계약기간인 3년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됨

서면법규소득-914, 2023.08.17

### 질 의

-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한 계약기간 10년 이상 저축에 가입한 근로소득자가 일정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 91의16①)
  -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위 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함(조세특례제한법 91의16④)
- 한편, 청년인 거주자가 위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한 계약기간 3년 이상 5년 이하의 저축에 가입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는바(조세특례제한법 91의20①)
  - 이 경우 해당 계약 해지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위 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함(조세특례제한법 91의20④)

### 질의

- 가입자가 최소계약기간인 3년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회 신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9, 2023.08.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9, 2023.08.09.

가입자가 최소계약기간인 3년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91의20④의 적용상 "해지"의 의미)  
(제1안)쟁점소득공제 적용 배제(계약기간 중 해지하

는 경우 전부를 의미)

(제2안)쟁점소득공제 적용 가능(가입일로부터 3년 경과 전 해지만을 의미)

회신 : 제1안이 타당합니다.

## 일부 거주하고 일부 임대등록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부동산-3960, 2023.03.10

### 질 의

- 다가구주택(A)과 일반주택(B)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의 일부(4호)는 임대등록하고 해당 주택의 일부(1호)는 거주하다가 임대무기간의 종료로 자동말소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 A주택 전체를 거주주택으로 보아 소령 155<20>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주택(A)과 일반주택(B)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의 1호에 거주하고 A주택의 나머지 4호를 임대등록하여 임대하다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부가세 세정지원 소상공인... 법인세 · 소득세 신고도 3개월 납부연장

국세청이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세목별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에 한 번에 통합 제공하는 세정지원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때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대상(1280만건)은 오는 3월 법인세 신고(5.2만건), 5월 소득세 신고(66.7만건)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혜택을 받는다.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최장 20일 단축해서 지급한다. 지난 1월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기준으로 23만건을 지원했으며, 3월 법인세 신고에서는 1만7천건을 지원할 전망이다.

정기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 제외 대상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전년대비 10~20% 이상 투자를 확대한 수출기업에 지원했다면, 올해는 전년대비 5~15% 이상만 투자해도 세무검증에서 제외해주는 식으로 내부 기준을 바꾼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올해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세정지원 및 공정과세 실현 방안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6.1조원 지급...지급대 상 약 80만 가구 늘어날 듯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총 6.1조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4일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로 약 47만 가구, 주택공시가격 하락으로 약 32만 가구가 올해 장려금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자녀장려금 가구 소득기준은 연 소득 4000만원 미

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소득 외에도 전세금을 합쳐 총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함에 따라 장려금 지급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은 이에 대비해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 국세청,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1만2천개 신고검증 제외

국세청이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1만2천개를 추가한다.

수출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하던 것을 대기업 납품 회사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대상 기업은 세금신고 검증 제외 및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수출·투자 기업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세무컨설팅 보강을 통해 납세자의 세금 문제 해결에 주력한다.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11만5천개에서 12만7천개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미래분야 및 수출 중소기업에 한정하던 것을 뿌리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등 대기업 납품회사에까지 확대하기 위함이다.

뿌리산업은 산업용 로봇, 주조, 금형, 열처리, 정밀가공 등 국내 제조업 중간재 회사들을 말한다.

지난해 중소 주류제조업체들이 대형 주류업체 수출망에 끼워서 수출했던 것에서 나아가 직접 해외 주류매장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막걸리 첨가물 제한, 창고면적기준 완화, 주류운반스티커 부착의무 등 주류업계 민원을 해결한다.

기업주 자녀가 적은 부담으로 부모의 회사를 물려 받을 수 있도록 기업승계 컨설팅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처리대상에 벤처기업 인증, 신성장·원천기술 심사를 추가하고, 정부지원과제 등 간단한 심사는 지방국세청에서 전담으로 처리한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관련 신청접수부터 결과통지까지 업무 모든 과정을 시스템화한다.

# 2024년 복지세정의 혜택이 더 커집니다

- 국세청, 2024. 2

-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 규모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sup>1)</sup> 및 주택 공시가격 하락<sup>2)</sup>으로 수급대상자가 지난해<sup>3)</sup>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하여 6조 1천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 (소득기준) 4천만 원 → 7천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80만 원 → 100만 원(약 47만 가구↑)
  - 2) '23년도 주택 공시가격 18.61% 하락(약 32만 가구↑)
  - 3) '22년 귀속 478만 가구에 5조 2천억 원 지급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에 따른 신청 대상 가구 증가에 대비하여 장려금 자동 신청 등의 대상을 확대하고,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 증원 및 '보이는 ARS'·'전화회신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하여 장려금 신청 편의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94만 명과 중증장애인 13만 명 등 총 107만 명이 자동 신청에 동의\*하였으며,
    - \* '22년 귀속 장려금 신청 110만 명 중 자동 신청 동의 107만 명(동의율 96.6%)
  - 특히,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연간 165만 명의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또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연인원 890명에서 930명으로 증원하여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 신청 기간 초기에 통화량이 많아 상담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이는 ARS 및 전화회신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지난해 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모한 우리 이웃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가 담긴 '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수상작(40건)을 전자책(e-book)으로 발간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3월 6일 게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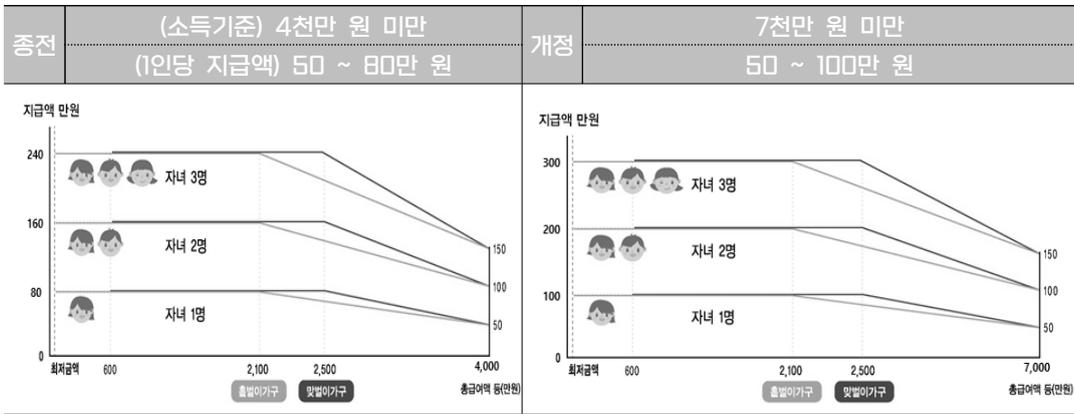
\* 국세청 >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참고자료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등 복지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1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으로 수급대상자 증가

-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47만 가구↑)
  - (제도 확대) 저소득가구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경제변화를 반영하여 '15년 자녀장려금 시행 이후 총소득기준 최초 상향 및 최대지급액도 상향
    - (총소득기준)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 (최대지급액) 부양자녀 1인당 기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 (증가 규모)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 약 47만 가구 증가 예상

《 자녀장려금 지급요건 및 수급모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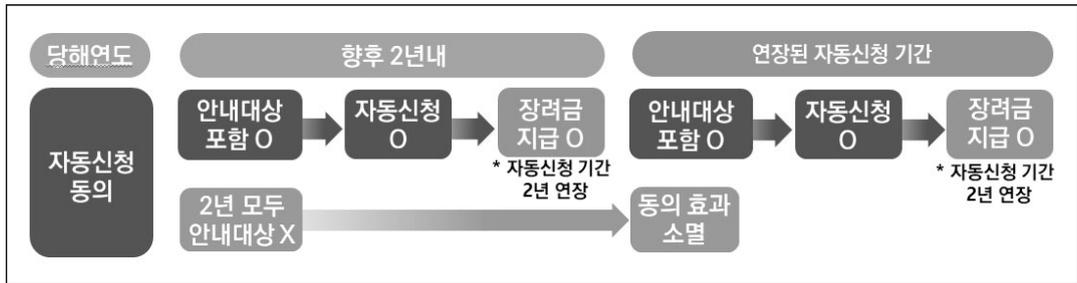


- 주택 공시가격 하락 (32만 가구↑)
  - (증가 규모) 주택 공시가격 18.61% 하락으로 올해('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는 지난해('22년 귀속)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 예상

\* 기재부 추산: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을 충족한 가구 재산가액에 지역별 공시가격 증감을 등을 반영하여 추정

## 2 자동 신청 대상 확대

- (동의 대상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165만 명 및 중증장애인 22만 명
  - (고령자) 올해는 1963. 12. 31. 이전 출생자
    - \* '24년 9월 상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1964. 12. 31. 이전 출생자
  - (중증장애인) 올해는 2023. 12. 31. 기준<sup>1)</sup> 중증장애인<sup>2)</sup> (가구원도 포함)
    - 1) 다만, '24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2022. 12. 31. 기준 중증장애인
    -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장애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 (동의 기간) 해당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내 자동 신청 1회 동의
  - 3. 1.~3. 15.(하반기분 신청), 5. 1.~5. 31.(정기분 신청), 9. 1.~9. 15.(상반기분 신청)
- (동의 효과)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의 장려금 신청 불필요
  - \*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는 자동 신청 동의 관련 내용 포함



- (처리결과 안내) 자동 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장려금 신청 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 신청 기간이 2년 연장
- (동의 방법)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요청 가능

### 3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 증원 및 상담 서비스 제고

□ 상담인력 증원

- 9회, 890명('23년) → 9회, 930명('24년)

	구 분	운영기간	인원
①	'23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	3. 4.~3. 15.	140
②	'23년 귀속 정기분 신청	5. 2.~5. 31.	240
③	'23년 귀속 반기분 지급·정산	6. 28.~7. 12.	100
④	'23년 귀속 정기분 지급	8. 26.~8. 30.	140
⑤	'24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	9. 2.~9. 19.	200
⑥	'23년 귀속 기한 후 지급(1차)	10. 25.~10. 31.	10
⑦	'23년 귀속 기한 후 지급(2차)	11. 21.~11. 27.	10
⑧	'24년 귀속 상반기분 지급	12. 13.~12. 24.	80
⑨	'23년 귀속 기한 후 지급(3차)	'25. 1. 17.~1. 24.	10
소계			930

※ 'xx귀속 : 'xx년도에 소득이 발생

□ 상담서비스 제고

- (보이는 ARS) 통화량이 많아 상담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즉시 답변
  - \*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 장려금 금액 및 지급 시기, 신청 안내 제외 사유 등
- (전화회신 서비스) 전화가 물리는 시간에 통화하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하여 상담
- (발신 전화 조회) 기존에는 통화 연결 후, 상담사가 주민등록번호를 물어 인적 사항 등을 조회하였으나
  - 앞으로는 발신 전화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일치할 경우, 미리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하여 더 신속하게 상담 서비스 제공
  - \*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 장려금 금액, 예금 계좌, 신청 안내 제외 사유 등



## 4 '24년도 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 주요 수상작 요약

(만 원)

인적 사항	수금액	주요내용
심○○ (’90生)	(합계) 490	<p>&lt; 한방울의 희망, 근로장려금과 함께 한 삶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로 인해 남편이 실직하여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중 건강도 악화되고 통원 치료를 하며 힘들게 생활함. 완화된 기준 덕분에 장려금 최대 금액을 받게 되었고 우리 가족에게는 메말라 있던 땅에 내리는 이슬비 같은 존재가 되어 열심히 살아갈 희망의 발판이 됨</li> </ul>
	(근로) 330	
	(자녀) 160	
박○○ (’01生)	(합계) 149	<p>&lt; 근로장려금, 희망을 보여준 지원군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턴 생활 시작 후 부모님으로부터 독립,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었음. 근로장려금을 받고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 선물을 사고, 자기 계발을 하여 긍정적인 자신감을 회복하였고 나아가 후에 사회에 나눔 등을 다짐한 생각의 전환점이 생김</li> </ul>
	(근로) 149	
	(자녀) -	
김○○ (’99生)	(합계) 165	<p>&lt; 나의 꿈에 날개를 달아준, 근로장려금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준비생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 힘들었지만 장려금을 받게 된 후 금전적인 불안감이 해소되어 힘을 얻고 졸업을 하고 원하던 회사에 입사함. 장려금이라는 든든한 지원을 발판으로 취업에 성공하였음</li> </ul>
	(근로) 165	
	(자녀) -	
박○○ (’81生)	(합계) 490	<p>&lt;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장려금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 가족이 제주로 가서 식당을 운영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고, 남편은 일용직 일을 했고, 본인도 취업하여 건강검진을 하던 중 유방암 임을 알게 됨. 수술하고 회복을 하던 중 장려금을 지급받아 병원비에 쓰고, 아이들을 학원도 보내줄 수 있어 장려금이 아닌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음</li> </ul>
	(근로) 330	
	(자녀) 160	

\* 상세내용은 국세청 누리집(국세청 >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참고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공익법인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 국세청, 2024. 2

## 1.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법인세과-4136, 2020.11.19.)

## 2. 출연받은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경우 증여세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하고 출연자가 해당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과세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은 사용 · 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인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6, 2018.3.6.)

## 3. 공익법인의 임원 관련 경비에 대한 가산세 적용대상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가산세로 부과하고 직·간접경비에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비도 포함됨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63, 2019.04.24.)

## 4. 비영리법인이 법령 등 개정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 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3, 2016.3.10.)

## 5.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이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 · 신고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공익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비



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제78조제10항제2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30, 2018.12.18.)

**6.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여부**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관련하여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에는 국고보조금을 포함함  
(법인세과-4135, 2020.11.19.)

**7.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법인에 소속된 다른 세무사 및 공익법인의 출연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법인(지점포함) 소속의 다른 세무사는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령해석과-4337, 2020.12.30.)

**8. 성실공익법인의 의무지출금액 미달사용에 따른 가산세 적용시 주식 5% 초과보유 판정**

성실공익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중에 1회라도 주식을 5% 초과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의 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법령해석과-836, ' 20.03.19.)

**9.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 납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에서 제외하므로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 것임  
(법령해석과-1576, 2021.05.04.)

**10.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현금의 경우에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현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법령해석과-3478, 2021.10.06.)

**11.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 없이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령 § 38⑤의 '운용소득' 계산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의 금액 계산 시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

서 발생한 소득금액' 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 을 가산하고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소득금액과 관련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이 포함된 금액)을 차감하는 것임

(법령해석과-3717, 2021.10.26.)

**12.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9, 2021.09.29.)

**13. 사회복지법인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

사회복지법인이 舊 「교육법」 에 따라 특수학교의 설립을 인가받아 운영하면서 그 외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법령해석과-1246, 2021.04.07.)

**14.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이 공익법인으로서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을 하지 않아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 21.1.1. 이후에도 출연재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잔여 출연재산을 모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후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납세협력의무를 면제함이 타당함

(공익중소법인지원팀-849,' 22.09.07.)

**15.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와 그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배제대상인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와 그가 속한 법인에 소속된 다른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공익중소법인지원팀-1822,' 22.12.08.)

**16. 「외부 회계감사」 의무대상 여부 판단 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포함되**



### 는지 여부

공익법인 외부 회계감사 의무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의료법인이 3년 이상 의료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공익중소법인지원팀-1823, ' 22.12.09.)

### 17.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이 산하의 모든 학교를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는지

공익법인(‘학교’)등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공익법인(‘학교’)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4367, ' 22.07.25.)

### 18.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대상 여부 판단 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대상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공익중소법인지원팀-391, ' 22.04.19.)

### 19. 「외부회계감사」 의무 대상 여부 판단 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출연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 의무 제외 대상인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20억원 미만” 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공익중소법인지원팀-428, ' 22.04.26.)

### 20.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계좌가 수익용 계좌로 사용되고 해당 주식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금은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87, ' 21.08.31.)

#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 국세청, 2024. 1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8.(목)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올해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세정지원 및 공정과세 실현 방안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 이날 발표된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첫 번째 과제로 두고, 이를 위해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되는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먼저, 신고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의 범위\*를 더욱 넓히고, 언제 어디서나 원터치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등을 새롭게 개발한다.
    - \* 부가가치세·법인세 미리채움 확대, 소득세·양도세 모두채움 고도화 등
  - 그리고, 인공지능(AI) 검색\* 도입 등을 통해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는 한편, 디지털 ARS 국세상담의 상담분야 및 운영시간(8시간 → 24시간)을 확대하고, 누적된 상담 데이터, 세법을 기계학습하여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알아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상담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한다.
    - \* 단어가 아닌 입력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여 납세자가 원하는 결과를 한 눈에 제공
  
- 또한, 경기 개선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아 민생 회복에 온기를 더하는 따뜻한 세정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다.
  - 우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2개월) 대상\*은 법인세·소득세도 같이 직권 연장(3개월)하고,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 \* 매출 급감 및 자금 경색에 처한 음식·소매·숙박·건설·제조업 등의 사업자



※ 지원대상 : ①부가세('24.1.) 128.0만 건, ②법인세('24.3.) 5.2만 건, ③소득세('24.5.) 66.7만 건

- 이와 함께,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 지원대상(신고분) : ①부가세('24.1.) 23.0만 건, ②법인세('24.3.) 1.7만 건

- 아울러, 우리경제의 재도약에 힘이 되도록 수출·투자 기업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세무컨설팅 보강을 통해 납세자의 세금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하였다.

- 먼저,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혁신성장·수출 중소기업 등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까지 확대(11.5만 개 → 12.7만 개) 한다.

\* 7개 지방청, 133개 세무서에 전용상담 센터를 신설('23.1.)하여 R&D 세액공제 우선 사전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제공, 특히 납부기한 연장 등 7.2조 원('23)의 자금 유동성 지원

- 또한, 해외 유통체인 등과 협업하여 중소기업 주류의 현지매장 직접 판매를 추진하는 한편, 막걸리 첨가물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는 혁파한다.

- 그리고, 2년차를 맞이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품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우선 처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업무 전과정을 시스템화한다.

\* (기존)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 → (추가) 벤처기업 인증, 신성장·원천기술 심사

- 한편, 공정한 세무조사와 세원관리로 자유 시장경제를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로 하였다.

- 우선, 민생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4,000여 건 이하로 운영하고,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할 예정이다.

\* 연도별 규모(건) : ('19) 16,008 → ('20) 14,190 → ('21) 14,454 → ('22) 14,174 → ('23) 13,992(잠정)

- 하지만, 불법사채,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탈세는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채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은닉 재산을 샅샅이 색출한다.

- 다만, 일시적 위기에 처한 성실한 소상공인 등의 생계형 채납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는 등 빠른 사업 재기를 지원한다.

-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을 중소 개인납세자에서 영세법인까지 확대한다.

\* 징계요구 대상 : (현행) 금품 요구 등 → (개선) 조사기간 임의연장 등 위법·부당한 행위 전반

-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국세청은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 경제활동의 자유를 세정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 "이날 발표된 주요 핵심과제들을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세무 애로와 건의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하여 즉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 하였다.
- 아울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2.15.(목) 개최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해당내용을 즉시 전파하고, 올해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하겠다"고 밝혔다.

## I 2023년 주요 추진성과

◇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였으며, 민생경제 지원을 확대하고 악의적 탈세·체납 대응 강화

### 1 (납세지원)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 세입예산 조달 노력

- (세수 확보) 글로벌 복합위기, 국내경기 둔화 등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신고지원·세수관리로 소관 세입예산 부족을 최소화

<'23년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

(단위: 조 원)

'22년 실적	'23년 예산	'23년 재추계	'23년 실적	증 감		
				'22년 실적대비	'23년 예산대비	'23년 재추계대비
384.3	388.1	333.2	335.7	△48.6	△52.4	+2.5

- (신고 지원) 세금비서\* 서비스,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확충하여 어디서나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질문에 답변만 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완성

- 특히, 복잡한 계산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완료되는 모두채움 신고를 종합소득세 전체 안내 인원의 절반까지 확대('22년 497만 명 → '23년 629만 명)

### 2 (경제지원)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활력 제고를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

- (피해 지원) 재해, 경영 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18조), 환급금 조기 지급(17조) 등 다각적으로 지원

▶ (재해 피해) 수출 중소기업·고용위기 기업(3월) → 강릉 산불(4월) → 집중호우(7월) 등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제도 활성화\*

\* 미납국세열람 : ('20.1~'23.3) 월평균 13건 → ('23.4~) 월평균 825건(63배 ↑)

- (서민생활 안정) 고령자·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 도입 및 다문화 가정



에 대한 홍보 강화로 저소득가구를 빠짐없이\* 지원

\* 장려금 지급액 : ('21년 귀속) 5.0조 원 → ('22년 귀속) 5.2조 원

-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349만 명에게 최근 5년간('18~'22 귀속)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 8,505억 원 지급

○ (성장·수출 지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7개 지방청, 133개 세무서)」를 신설하여 혁신 성장·수출 중소기업 등에게 체계적인 세정지원\* 제공

\* 법인세·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 관세청·KOTRA와 MOU를 체결하여 수출기업을 함께 지원\*하고, 진출기업 간담회(80 회)·재외교민 설명회(6회)를 통해 세무 애로 해결

\* (관세청) 내국세·관세 통합 세정지원, (KOTRA) 129개 해외 무역관을 통해 공동 지원

○ (컨설팅 확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대상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기업으로 넓히고,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의 지원규모 확대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대상: (기존) 수입금액 100 ~ 1,000억 원 → (확대) 모든 중소기업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지원규모: (기존) 150개 → (확대) 189개

③ (공정과세)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및 악의적 탈세·체납행위 엄단

○ (권익보호 강화)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조기 처리할 수 있는 소액사건 기준금액 완화

-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에 대한 국선 세무대리인 지원 확대

▶ 조기처리 소액사건 기준금액: (기존) 3천만 원 미만 → (상향) 5천만 원 미만

▶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불복 청구금액: (기존) 3천만 원 이하 → (상향) 5천만 원 이하

○ (조사부담 완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 수준인 13,992건\*까지 감축 운영

\* 총 조사건수 : ('18) 16,306 → ('20) 14,190 → ('22) 14,174 → ('23) 13,992(잠정)

○ (탈세 엄단)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탈세, 고액학원·대부업 등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 탈세, 온라인 신종 탈세 근절에 역량 집중

○ (체납 대응) 기획분석을 통해 변칙적 재산은닉행위를 발굴하고,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한 실 거주지 탐문·수색 등 현장징수 활동 강화

○ (투명성 제고) 공익법인 성실신고 지원\* 및 회계부정, 기부금 사적사용 등에 대한 검증 강화를 통해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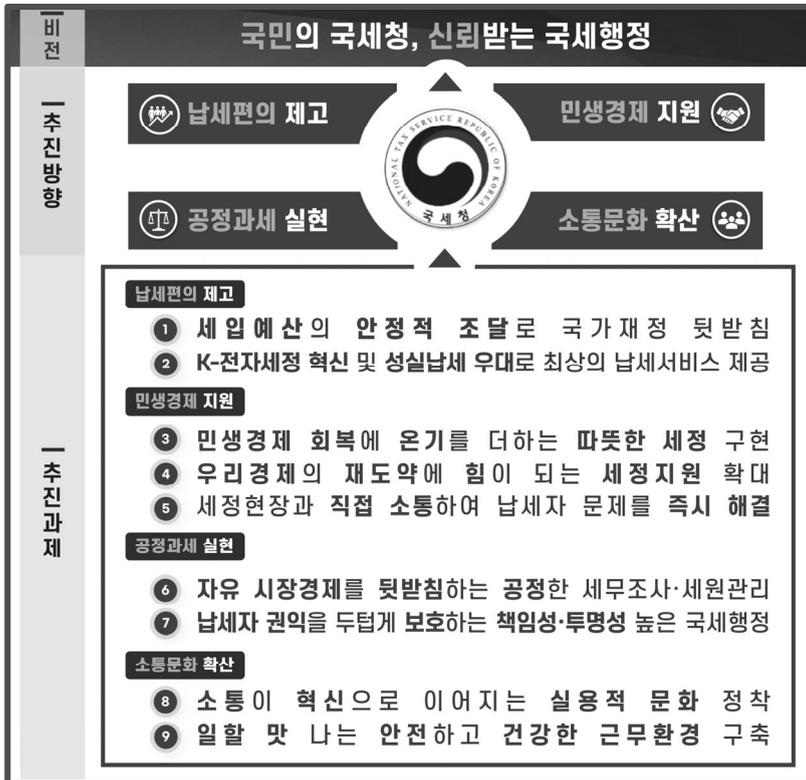
\* 공익법인 종합안내포털 구축, 세법교실 확대 운영, 미리채움·오류알림 확대 등

## II 2024년 국세행정 여건 및 운영방향

### 1. 국세행정 여건

- (경제 전망) 수출 중심 경기 회복 기대되나,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
- (민생 상황)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서민생활 부담 여전
- (시장 여건) 기업투자·경영활동 위축으로 경제 활력 제고 노력 필요
- (구조 변화) 인구위기, 국가채무 증가 등 경제구조 변화 가속화

### 2.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향





## 2024년 핵심 추진과제

## 1 납세편의 제고

- ◇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K-전자세정 혁신으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국가 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

## ①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로 국가재정 뒷받침

## 가 '24년 소관 세입예산 및 세입여건

- (세입 예산) '24년 소관 세입예산은 357.1조 원으로 '23년 세입예산 대비 △31.0조 원 감소, '23년 실적 대비 +21.4조 원 증가

'24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단위 : 조 원)

구 분	'23년 예산	'23년 실적	'24년 예산	증 감	
				'23년 예산대비	'23년 실적대비
국세청 소관	388.1	335.7	357.1	△31.0	+21.4
총국세	400.5	344.1	367.3*	△33.2	+23.2

\* '24년 총국세 예산 (367.3조) = 국세청 소관(357.1조) + 관세(8.9조) + 타기관농특세(1.3조)

- (세입 여건) 국내 경기는 반도체·수출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내수 개선 지연 등 불확실성이 상존

\* 경제성장률 : ('23) 1.4% → ('24) 2.2% <기재부> / ('23) 1.4% → ('24) 2.1% <한국은행>

## 나 세수관리 및 조달노력 강화

- (상시 점검) 세수상황 점검회의(차장 주재, 매월 개최)를 통해 주요경제지표, 납세현장 상황을 종합 반영하여 세수 진행상황 및 우발요인 등 점검·관리
- (역량 집중) 주요 세목 신고도움 확대 등 성실신고 지원, 고액체납·불복 대응체계 구축 등 다각적으로 세입예산 조달 노력

② K-전자세정 혁신 및 성실납세 우대로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

가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되는 비대면 신고서비스 확대

- (미리·모두채움) 국세청이 신고서 항목들을 알아서 먼저 작성해줘서 납세자 확인만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미리·모두채움 서비스 지속 확충

'24년 새롭게 확대되는 미리·모두채움 서비스

- ▶ 부가세 미리채움 확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내역 등
- ▶ 소득세 모두채움 고도화: 연말정산 시 누락한 교육비·인적공제 반영 등
- ▶ 법인세(중간예납) 미리채움 확대: (기존) 12월 결산법인 → (확대) 기타월말 결산법인
- ▶ 양도세 모두채움 고도화: (기존) 단기보유세율 적용 토지 → (고도화) 일반 토지

- (모바일 신고 고도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신고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 예정

\* 기존 모바일 서비스는 PC 기반 홈택스 화면을 그대로 옮긴 수준으로 간단한 세무정보 조회 위주로만 사용됨, 특히 종합소득세의 경우 모바일 신고 건수는 홈택스 신고 대비 5%에 불과

- ▶ 이중 근로소득자, 임대·기타 소득이 있는 근로자 등을 위한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
- ▶ 인적용역 소득자를 위한 소액 환급금 조회 및 간편 환급신고 서비스

- (연말정산 일괄제공)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 개선
  -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연말정산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누락하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해 맞춤형 안내 및 제공자료 확대 추진

- ▶ (청년 안내) 월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등
- ▶ (장애인 안내)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료 등

- (신고오류 자동검증) 납세자가 신고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확인\*(오류발생시 팝업 안내)하여 시정할 수 있는 검증 서비스 확대

\* ①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세액공제 대상 여부, ②소득세: 신고안내자료의 수입금액과 다르게 입력, ③법인세: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 오류 등 41개 항목

나 똑똑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능형 홈택스 구현

- (홈택스 개편) 토스, 카카오뱅크 등 직관적이고 이용하기 쉬운 민간의 최신 IT서비스와 동 일한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도화



- 법정용어와 일치되는 결과만 조회되는 시스템('12년 구축)을 입력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여 납세자가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AI 검색으로 개편
  - \* 검색어 입력 오류 보정, 일상용어 등 유사어·자연어 검색, 동영상·이미지 결과 제공 등

- (포털 개편) 840개 서비스를 148개로 통·폐합하여 직관적 포털 구축
- (화면 개선) 공급자 관점의 업무 프로세스를 수요자 관점으로 전면 재설계

- (안정성 강화) '전산장애 ZERO' 지속을 위해 장애예방·긴급대응 체계를 상시 점검하고, 재해복구 시스템('15년 구축) 증설 추진

#### 다 디지털 국세상담을 보다 많은 납세자에게 제공

- (디지털ARS 확대) 단순 전화상담 수요를 대체하는 디지털ARS의 상담 분야\*·시간(8h → 24h)을 확대하여 전화응답률 개선 추진('23, 79% → '26, 88%)
  - \* 예정고지 등 조회, 민원구비서류 문자발송, 신고 동영상 안내 등 추가
- (AI 상담 도입) 상담데이터와 세법을 기계학습하여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하는 생성형 AI 상담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시범 도입

#### 라 성실납세자 우대 강화로 납세의 보람과 자긍심 고취

- (모범납세자 우대) 다자녀 납세자, 장수기업 등 선정대상을 다각화하여 다양한 스토리를 발굴하고, 사회공헌납세자에 대한 훈격 상향 협의
  - 모범납세자: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과 상생의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로 매년 납세자의 날(3.3.)에 표창 등 수여
- (세금포인트 혜택) 국민들이 성실납세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관광지(경주 등) 외식·숙박업체, 영화관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추진
  - 세금포인트: 개인·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해당 포인트를 이용하여 납세담보 면제, 우수 중소기업 제품 할인 구매 등 혜택 제공

## 2 민생경제 지원

- ◇ 민생경제 안정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여 영세납세자 세정지원 및 기업의 수출·투자 뒷받침 추진

### 3 민생경제 회복에 온기를 더하는 따뜻한 세정 구현

#### 가 중소기업 세정지원 확대 및 세무검증 부담 축소

- (세정지원 패키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세목별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을 한 번에 통합 제공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2개월) 대상은 법인세·소득세도 같이 직권 연장(3개월) 하고,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을 최대 1년 유예
  - ※ 지원대상 : ①부가세('24.1.) 128.0만 건, ②법인세('24.3.) 5.2만 건, ③소득세('24.5.) 66.7만 건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 ▶ (건설업·제조업) 고금리, 부동산경기 침체로 매출이 급감(최소 △30%)한 개인·법인사업자
- ▶ (음식업·소매업·숙박업)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개인사업자

- (환급금 조기지급)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법정기한보다 최장 20일 단축)
  - ※ 지원대상(신고분) : ①부가세('24.1.) 23.0만 건, ②법인세('24.3.) 1.7만 건

#####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 ▶ (부가세) 매출액 1,500억 이하 중소기업(3년 이상 계속사업) 및 10억 이하 영세사업자 등
- ▶ (법인세) 수출 중소기업(수출 비중 50% 이상 등),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등

- (세무검증 완화) 일자리창출·수출·투자확대에 기여한 기업 중심으로 정기조사 선정, 신고 내용 확인 등 검증 제외 대상\* 추가 발굴 추진
  - \* (대상) 일자리창출기업, 수출 중소기업, 투자확대 기업, 혁신·스타트업, 사회적기업 등
  -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 투자확대 기업의 검증제외 요건 완화\*
  - \* (기존) 전년대비 10~20% 이상 투자 확대 → (개선) 전년대비 5~15% 이상 투자 확대

#### 나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촘촘한 복지세정 제공

- (장려금 지급) 자녀장려금제도 확대\* 등 변경사항을 신청·심사시스템에 사전 반영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증가(+79만 가구 예상)에 차질 없이 대응
  - \* (소득기준) 4천만 원 → 7천만 원 이하, (최대지급액) 80만 원 → 100만 원
  - 장려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초년생·고령층·노숙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안내 및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콜백\*(call-back) 서비스 도입
  - \* 상담량이 많아 즉시 상담이 어려운 경우 예약 번호를 남기면 당일 내에 상담원이 연락



취약계층 맞춤형 안내

- ▶ (초년생) 알바천국·잡코리아 등 구직사이트, 신병교육대(국방부), 대학 게시판(교육부)
- ▶ (고령층) 시니어클럽 회원, 노인일자리 참여자, 임대아파트 거주 노인 등
- ▶ (노숙인) 노숙인 관련 복지시설 현황 자료 수집·활용

○ (환급금 찾아주기)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 신고 서비스의 편의성\* 개선

\* 여러 귀속연도를 각각 신고할 필요 없이 클릭 한번으로 모두 신고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물가안정 기여) 확대\*되는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수입산 대비 국산제품의 세금 역차별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가격 인하

\* 시행품목 : ('23) 승용차, 가구, 모피, 소주 등 → ('24) 캠핑용 자동차, 청주·과실주 등 발효주

- 기준판매비율 : 국산제품과 달리 수입산 제품의 세금부과 기준금액(과세표준)에는 판매이윤, 유통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는바 국산제품의 과세표준에서 일정 비율 차감

○ (소득자료 공유) 실시간 소득과약제도가 국정과제 「소득기반 고용보험」 구축 등 다양한 복지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 추가 제공\* 협의

\* 교육부(사회위기 관리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 보험사무 간소화) 등

○ (학자금상환 지원) 상환유예 제도를 동영상·모바일 알림 등 청년이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홍보하고, 교육부와 협업하여 연체가산금 인하 추진

\* (기존) 납부기한 경과 후 매월 1.2% → (개선) 매월 0.5%

4] 우리경제의 재도약에 힘이 되는 세정지원 확대

가 역동적 경제성장을 위한 수출·투자 기업 지원

○ (지원대상 확대)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 추가

\* (자금유동성 지원)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경정청구 우선처리 등 ('23년 7.2조 원) (경영 지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 확대

기존 지원대상 (11.5만 개)	+	2024년 추가 (1.2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성장·수출 중소기업</li> <li>▶ 신기술·신산업 중소기업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부품·장비 기업 : 원재료, 중간재, 생산설비 등 생산</li> <li>▶ 뿌리산업 분야 기업 : 공정기술, 로봇·센서 등 기술 보유</li> </ul>

○ (전략적 세정외교) SGATAR 총회 개최 등 고위급 협력 강화로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걸림돌 및 교민들의 세무 애로 신속\* 해결

\*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해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우선 추진

- SGATAR(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아태 지역 세정협력 및 조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국세청장 회의로 제53차 총회가 '24.10월 한국 개최 예정

- (글로벌최저한세 대비)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하여 제도 최초 시행('24.1.1.)에 따른 우리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 해소 지원

- 글로벌최저한세: 해외자회사 소재국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 시 모회사 소재국에 추가 과세권 부여 → '24년 우리나라·영국·프랑스·일본 등 50개국 시행

- (K-SUUL 수출지원) KOTRA, 해외 유통채인과 협업하여 중소 주류사가 해외소비자를 직접 공략할 수 있도록 수출채널 다변화

\* ('23) 하이트·롯데 등 대형주류사 수출망 활용 → ('24) 해외 현지매장 직접판매 추진

- 막걸리 첨가물 제한, 창고면적기준 완화, 주류운반스티커 부착의무 등 우리 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약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혁파

#### 나 기업의 세무 위험을 해소하는 고품질 컨설팅 제공

- (가업승계 컨설팅)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명품 컨설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관리시스템 구축, 사후관리 강화 등 품질 향상 노력

- (시스템) 대상자·상담여부 확인, 상담내용·진행상황 조회 등이 가능한 전산화면 개발
- (사후관리) 사후관리기간 단축 등 개정사항, 대표이사 취임 등 공제요건 미충족 여부 안내

-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정부지원과제 등 간편한 심사는 지방청 전담 처리

\* (기존)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 → (추가) 벤처기업 인증, 신성장·원천기술 심사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행 1년간의 주요사례를 공유하고, 업무 전과정(신청접수 → 검토 → 결과통지) 시스템화

#### 5 세정현장과 직접 소통하여 납세자 문제를 즉시 해결

- (찾아가는 세금상담) 창업지원센터·소상공인단체 등 세무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방문하여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를 적기에 발굴·해소



'23년 문제해결 사례 (적극행정 우수 수상)

- ▶ 아파트 분양업자(위탁자)의 세금 체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되어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의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개정세법\* 분석 및 부동산 신탁회사(수탁자)에 대한 설득으로 체납액을 대신 징수하고 압류 해제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
- \* 종합부동산세법 §7의2 ('20.12.개정) : 위탁자 재산으로 채권확보 곤란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세금의 납부 의무 있음

- (민생·경제 소통) 민생현장·산업현장 방문, 경제단체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마련
- ※ '23년 국세청장 현장방문 : 공주산성시장, 남동산단, 중기중앙회 등 16회

'23년 주요 개선사례

구분	건의 내용	개선 현황
민생지원소통단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대상 명확화 (서초세무서)	법령개정 완료
산업현장 방문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감가상각비 현실화 (시화산단)	법령개정 건의
경제단체 간담회	▶ 내국법인의 벤처펀드 투자양도차익 비과세 (중기중앙회)	법령개정 건의

3 공정과세 실현

◇ 민생경제의 균등한 회복과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체납을 엄단하고, 조사·불복 전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빈틈없이 보호

⑥ 자유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한 세무조사·세원관리

가 민생 회복을 저해하지 않는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

- (조사규모 유지) 대내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 및 민생 안정을 고려하여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유사한 14,000여 건 이하로 운영
  - \* 연도별 규모(건) : ('19) 16,008 → ('20) 14,190 → ('21) 14,454 → ('22) 14,174 → ('23) 13,992 (잠정)
- (조사부담 완화)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고, 명백한 탈루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만 시행

**조사부담 완화방안**

- (절차 개선) 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15 → 20일) 전면 시행(중소 납세자 → 모든 납세자)
- (조사 유예) 수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조사 유예 연장('24.12. → '25.12.)
- (선정 제외)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은 정기조사 선정대상 제외 지속

**나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위협하는 고의적 탈세 근절**

- (민생침해 척결) 서민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민생 안정을 저해하고,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생활밀착형 폭리 탈세 대응에 조사역량 집중

- 살인적 고금리, 협박·폭력을 동원한 불법 추심으로 취약계층을 착취하는 불법사채 분야
- 주가조작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분야
- 과도한 불법수익을 보장하고 거짓·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단계판매 사기 분야

- 특히,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체납·재산추적, 유관기관(검찰·경찰·금감원) 공조 등 총력\* 대응

\* (주요 추진사항) ①대규모 전국 동시조사 실시, ②금융조회·생활탐문을 통한 체납징수, ③ 호화생활·자산취득 모니터링을 통해 일가족까지 자금출처조사 등

- (불공정 엄단)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성실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적 탈세 엄단

- 사주의 법인자산(별장·고가수입차) 사유화, 근무 없이 고액급여 수령 등 호화·사치생활
- 능력·노력·경쟁이 아닌 부당 내부거래 및 불공정 사업재편 등을 통한 부의 대물림

- (역외·신종탈세 선제대응)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및 온라인 신종산업 관련 정보수집·분석 강화로 신종 탈루혐의 사전 포착

- (역외) 해외신탁 자료제출 제도 도입, 역외탈세정보 전담팀 신설 등
- (신종) 공유숙박 등록자료, 중고거래 중개자료, 유튜브 외환거래자료 등 구축

- (조사인프라 확충) 경제의 급격한 디지털화·글로벌화에 대응하여 적시성 있는 현장조사 지원을 위해 조직 보강 및 시스템 구축

<b>지방청별 포렌식 지원팀 신설</b>	<b>거주자 판정 지원시스템 도입</b>	<b>해외직구 통관자료 수집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지방청에 포렌식 지원 전담팀을 설치하여 조사팀의 지원요청에 신속 대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거주자 위장 혐의 검증을 위해 국내 경제활동·자산 등에 대한 일괄조회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청에서 공유 받는 통관 자료 확대 및 조회·분석 시스템 개발('24.5.)</li> </ul>



**다** 악의적 체납자 현장 추적 강화 및 성실 납세자 사업재기 지원

- (고액·상습체납 근절) 과세자료 연계분석\* 및 기획분석을 통해 신종투자상품, 귀금속 등을 이용한 체납자의 다양한 재산은닉 수법 발굴
  - \* 특수관계자간 자본거래, 고급 중고자동차 판매자료, 특허권 양도자료 등
- 세무서 추적 전담반 확대('23, 19개 → '24, 25개), 지방청·세무서 합동수색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개선 추진
  - \* (예시) 명단공개자 관련 정보 제공 확대(나이 → 생년), 외국인 출국정지기간 연장(3 → 6개월)
- (사업 재기 지원)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성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 신청시 적극적으로 승인
  - \* (대상) 매출 급감 및 자금 경색에 처한 음식·소매·숙박·건설·제조업 등의 사업자

**7** 납세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책임성·투명성 높은 국세행정

**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자기시정 기능 제고

- (감독기능 강화) 조사 중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징계요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팀 교체신청이 가능함을 사전안내
  - \* (현행) 금품·향응 등 요구 → (개선) 조사기간 임의연장 등 위법·부당한 행위 전반
- 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감독하는 세무조사 참관제도의 신청기한 및 참관횟수\* 확대
  - \* (납세자 신청기한) 조사종결 7일 전 → 3일 전까지, (참관횟수) 1회 → 2회
- (국선대리인 활성화) 신청대상을 중소 개인납세자에서 영세법인까지 확대하고, 조세전문가 단체와 협의하여 역량 있는 전문가 확보 추진

**나** 과세행정 전 과정에서 책임성 강화

- (과세품질 제고) 불복 예상되는 고액쟁점은 사전심\* 의무화하고, 일관성 있는 과세를 위해 법령해석 기능 통합(법규과·법무과 → 법규과)
  - \* 조사팀·심의팀이 함께 불복 예비자료 생산 → 심의팀이 공판검사에 준하여 책임 대응
- (패소사건 환류 체계화) 파급력이 큰 중요 패소사건\*은 관련부서가 모두 참여하여 후속조치를 마련(법령·제도 개선)하고 주기적 이행점검 실시
  - \* 500억 원 이상 고액사건, 동일쟁점 선행사건, 국세기본법 관련 쟁점 등

**다** 공익법인 성실신고 지원 및 불성실 검증 강화

- (신고 지원) 세무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성실신고를 위해 주석표준안\* 시행, 출연재산 보고 및 결산 공시의무 통합신고시스템 구축
  - \* 주석 항목별 기재사항을 간략한 표 형태로 구성하고, 작성대상·방법·예시 등 제공
- (검증 강화) 외부 회계감사의견 부적정, 특정계층 장학금 혜택 제공, 출연재산 의무지출 위반 등 신규 불성실 혐의 항목 발굴·검증\*
  - \* 회계부정·사적유용 등 불성실 확인 법인에 대해서는 3년간 사후관리

**4 소통문화 확산**

◇ 관리자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업무 혁신 및 근무환경 개선 추진

**8 소통이 혁신으로 이어지는 실용적 문화 정착**

**가** 현장의 눈높이에 맞춰 일하는 방식 개선

- (업무효율 제고) 일선직원과 쌍방향 소통\*을 통해 현장의 업무량·처리절차를 진단하고 불필요한 일 버리기, 수동업무 자동화 등 추진
  - \* (온라인) 업무개선 게시판, (오프라인) 국세청장 현장방문('23년 지방청 7회, 세무서 15회)

**'23년 업무혁신 추진사례**

업무총량제 도입	전산 프로세스 개선	Paper-less 세무서 구현
▶ 일선 업무종류·건수 상한* 규정(3년 평균 초과 금지) * 실효성 없는 기존 업무 통합·삭제해야만 업무 신설 가능	▶ 분산된 업무처리 화면 통합 및 일괄처리 구축 * 과세예고 화면 통합, 경정청구·증여세 일괄결정 등	▶ 홈택스 자동접수·등록* 시스템 개발 * 모든 종이문서들이 자동등록 → 문서 편철·보관 의무해소

- (업무평가 개편) 현장 직원의 업무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BSC 평가지표 개정 전에 일선직원 의견 수렴·반영 절차 신설

**나** 청렴하고 적극적인 공직문화 확립

- (청렴문화 활성화) 청렴연수원(국민권익위 산하) 전문강사를 섭외하여 MZ세대와 함께하는



청렴리더십 등 경력별·분야별 맞춤형 교육 실시

-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성실한 재산등록 지원

\* 가상자산 관련 업무수행자의 보유 제한, 재산공개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등

- (적극행정 정착)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업무지연·부실처리 등 중점 점검하여 소극행정 근절

\* 적극행정 실천시 마일리지를 부여·적립하여 포상휴가, 감사처분 감경 등에 사용

## 9 일할 맛 나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구축

### 가 직원의 안심과 행복을 뒷받침하는 일터 조성

- (악성민원 대응) 악성민원 발생 시부터 지방청에서 현황을 관리하고, 처리 지연 시 해당 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공동대응하도록 개선
  - 공무원 안심번호 전면 시행, CCTV·전자순찰시스템 등 안전설비 확충, 세무서 스피드게이트·전담경비인력 확대 등 직원 안전 보강
- (근무여건 개선) 신규직원 등에 대한 임차료 지원 및 임차합숙소 예산 확대(35 → 50억 원), 업무 관련 전문서적 구입비용 지원(1인당 5 → 8만 원) 강화
  -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재충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심리치유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결합한 힐링캠프 및 체육·문화활동 지원 확대

### 나 효율적 업무추진을 지원하는 조직·인력 관리

- (현장직급 조정) 일선 업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직무의 책임성(직무영향·재량)·난이도(지식·기술·의사소통)에 상응하는 직급 조정 추진

#### '23년 추진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및 악성민원 대응역량 강화

- ①부산청 감사관·납세자보호담당관(4→3.4급), ②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6→5급 14명), ③세무서 민원실 직원(7→6급 106명, 8→7급 160명, 9→8급 104명) 등

- (승진적체 완화) 일선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국세청 인력구조에 맞는 인사 운영을 위해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인사처와 협의
  - ※ ('23년 추진성과) 인사특례규정(대통령령)을 신설하여 근속승진 심사대상 확대
- (교육·훈련 다양화) 신규직원의 조기적응을 위해 새내기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및 업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 제공

- (체험형 교육) 새내기 마음준비, 슬기로운 세무서 생활 체험, 선배와의 대화 등
- (마이크로 러닝) 5분 이내 동영상 강의 제공 (예: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방법)

## 참고 - 2024년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운영계획

### □ 추진 배경

-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 구현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 경제활동의 자유를 세정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TF 운영계획 수립

### □ 그간의 운영 경과

-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원하고, 국세청 비전인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TF\*를 신설·운영('22.7.)
  - \* 분과 구성 : ①민생경제지원, ②납세불편해소, ③과세투명성·책임성강화, ④조직문화혁신
  - 추진과제 총 181건을 발굴하여 163건(90%) 추진완료('24.1월 현재)

### □ 향후 추진계획

- (추진체계 개편) ①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 ②경제활동의 자유 지원을 운영목표로 설정하고, 분과 명 및 분과 구성 전면 개편
- (신규과제 발굴) '23년 미완료 과제(18개)를 이관하여 지속 추진하고, 운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과별 과제 발굴 추진(~2.16.)
- (이행관리 강화) 전체(반기 1회)·분과(분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과제 추가·조정, 이행방안별 실행계획 마련, 이행상황 점검 등 실시

# 중소형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지급 등 다수의 자금유용 사례발견

- 금융감독원, 2024. 2

##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회계법인의 자금유용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다수의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을 확인하였음

\* 중소기업회계법인에서 발생한 자금유용 등의 적발에 대해서는 '23.11.1.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잠정)」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음

### 【부당거래 사례】

- 사례①** 사실상 업무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고령의 부모, 형제 등에게 가공급여 또는 기타 소득 부담 지급
- 사례②** 소속 회계사 본인이 소유한 업체(페이퍼컴퍼니)에 실질적인 용역거래 없이 가치평가 의뢰 등의 명목으로 허위 비용 지급
- 사례③** 소속 회계사가 공인회계사회 회칙을 위반하여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대부업법상 금지제한을 회피하려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경영자문 명목의 추가 수수료를 수취
- 사례④** 퇴사한 회계사에게 과거 관리하던 고객사 관련 매출의 일정액을 별다른 이유없이 매년 지급

- 금융감독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횡령·배임혐의는 수사기관에 정보제공, 대부업법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은 소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회계법인을 사익 추구수단으로 악용하는 회계사들이 상장법인 감사업무에 발붙일 수 없도록
  - 유사사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통합관리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상장사 감사인등록법인은 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의 확보를 위해 자금인사 등 경영전반의 관리체계를 One-firm 체제로 구축·운영하여야 함

## I 점검 배경

-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과정에서 소속 공인회계사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 혐의를 발견\*
  - \* '23.11.1. 보도자료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잠정)」
  - '23년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12사)에 대한 점검결과, 다수의 중소형회계법인에 서도 유사한 사례를 발견
  - ※ 부당거래 혐의 규모 : 10개 회계법인, 회계사 55명, 부당행위금액 50.4억원

## II 주요 점검결과(잠정)

※ 위반혐의 및 금액 등은 향후 처리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 고령의 부모 등에 대한 가공급여 및 허위의 기타사업소득 지급

◆ 부모, 형제 등 가족을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하여 근로제공 없이 급여를 지급하거나, 용역제공 없이 기타사업소득 등을 지급

사례① A회계법인 소속 이사 甲은 고령의 아버지(42년생, 81세)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하여, 총 83백만원(월평균 1.5백만원)의 가공급여 지급

✓ 출입기록과 지정좌석이 없고, 담당업무가 불분명하여 확인 가능한 업무수행 증빙이 없음

사례② B회계법인 소속 이사 乙은 동생을 B회계법인 운전기사로 고용하고, 총 57백만원(월평균 1.9백만원)의 가공급여 지급

✓ 회계법인에 고용된 유일한 운전기사(상급자인 법인대표는 운전기사가 없음)로 운행일지, 주유기록, 차량정비 기록 등이 미비

사례③ C회계법인 소속 이사 丙은 고령의 어머니(54년생, 71세)에게 사무실 청소명목으로 기타소득(총 4천만원)을 부당지급

✓ 청소용역 계약서나 업무산출물 등 실제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

## 2 특수관계법인(페이퍼컴퍼니)에 용역수수료 부당지급

◆ 소속 회계사 또는 본인의 가족 등이 임원이나 주주인 특수관계법인(페이퍼컴퍼니)에 가치평가 등의 용역을 의뢰하고 실질적인 용역제공 없이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부당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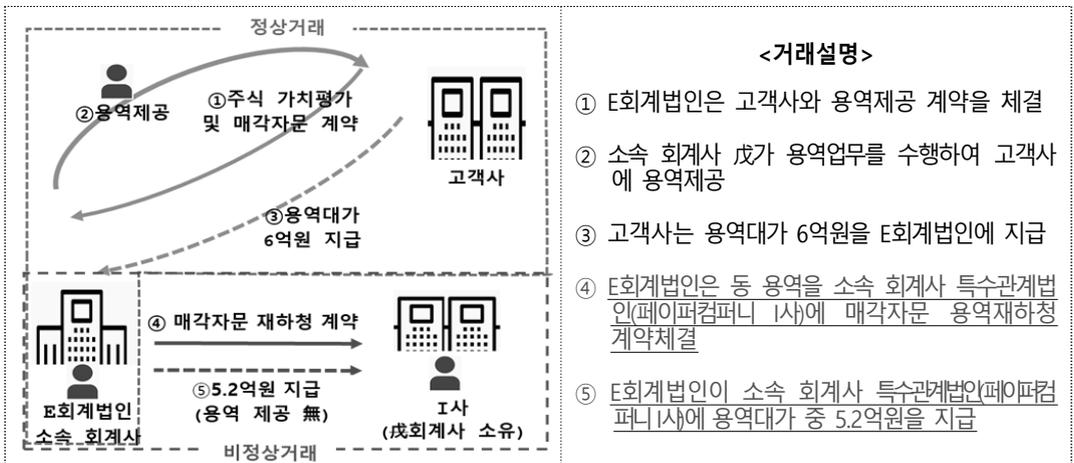
사례④ D회계법인 이사 丁은 금융상품가치 평가에 필요한 금융시장정보를 본인의 특수관계법인\*(페이퍼컴퍼니 H사)로부터 고가에 구입하는 용역계약을 체결  
\* 시장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1.3.17일 설립하였으며, 본인 및 동생이 이사로 등재

- ✓ 금융시장정보 제공회사에 회원가입만 하면 시장정보를 3백만원에 사용가능함에도 H사로부터 1.7억원에 입수함에 따라, D회계법인은 용역수수료 1.7억원을 H사에게 부당지급하게 됨

사례⑤ E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戊는 비상장주식 매각 성공보수 5.2억원을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페이퍼컴퍼니 I사)로 수취

- ✓ E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戊는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및 매각자문 업무를 수임
  - 상기 업무를 수임한 후 회계사 戊는 E회계법인이 특수관계법인\*(페이퍼컴퍼니 I사)에게 매각자문 업무를 하청주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3.4.25 설립, 소속 회계사가 1인 주주이고 장인이 대표이사
  -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매각할 경우 E회계법인이 수취하는 성공보수의 대부분을 E회계법인이 I사에게 지급하는 조건
  - 그러나, I사는 소속 직원이 없어 회계사 戊가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E회계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5.2억원을 I사에 부당지급함
    - \* 성공보수[(주당 매각가격-주당 평가액)×주식수] 지급

<부당거래 유형 (사례⑤관련) : 특수관계법인에 용역수수료 부당지급>



### 3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대부업 영위

사례⑥

F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소상공인으로부터 최고금리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

✓ F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근는 본인이 대표이사인 대부업체('13년 지자체 등록)를 설립·운영\* 하면서 '19.6월 회계법인에 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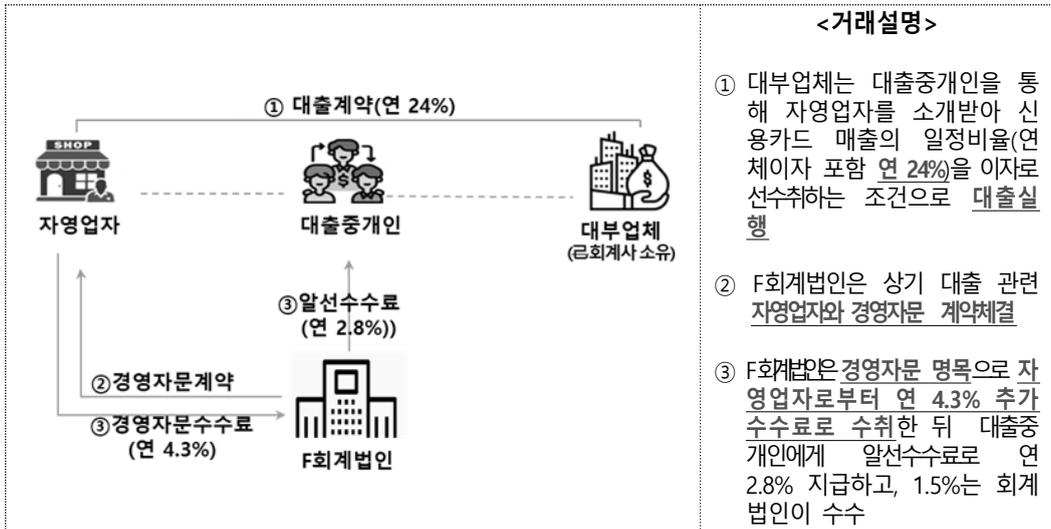
\* 대부업체 대표로 재직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상 전업의무 위반

- 대출중개인을 고용하여 소상공인 대상 신용카드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제한\*(연 24%)을 우회하기 위해 차입자로부터 약정이자 연 24% 이외에 연평균 4.3%에 이르는 추가수수료를 경영자문 명목으로 수취

\* (대부업법 §8, 시행령 §5) 대부업자는 연체이자, 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하여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수취할 수 없음('21.7.7 이전 최고금리 제한은 연 24%)

- 추가수수료 중 2.8%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출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1.5%)는 회계법인이 수수

#### <부당거래 유형 (사례⑥관련) : 대부업체 불법운영>



### 4 퇴직회계사에 대한 알선수수료 지급

사례⑦

G회계법인은 퇴사한 회계사 庚은 과거 관리하던 고객사 관련 매출의 30% (총 1.2억원, 월평균 3백만원)를 별다른 이유없이 매년 지급



- ✓ 알선수수료 수수를 금지한 공인회계사 윤리규정 위반\* 소지
  - \* 「공인회계사윤리기준」 문단 240.7. 개업공인회계사는 어떠한 종류의 알선수수료도 지급하거나 수령해서는 아니된다
  - 알선수수료 지급으로 실질보수가 하락하여 감사업무에 충분한 인력이 투입되지 않아 감사품질의 저하를 초래할 우려



### 향후 계획

- 소속 공인회계사의 횡령·배임 혐의는 수사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공인회계사법 및 대부업법 위반혐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 상장법인 감사인등록요건 위반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제재를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회계법인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회계사들이 상장법인 감사업무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고
  - 회계법인의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강구하여 자금인사, 성과급 지급 등 통합관리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상장사 감사인등록법인은 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의 확보를 위해 자금인사 등 경영전반의 관리체계를 One-firm 체제로 구축·운영하여야 함

# 「M&A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 금융위원회, 2024. 2

2.6일(화),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M&A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23.5월 발표한 「기업 M&A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세부내용에 대해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M&A 시장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

M&A는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M&A를 통한 경쟁력 확보는 더욱 중요하다 하였다. 아울러 M&A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지배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의사결정으로 일반주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고려해 합병 진행 과정에서 주주의 동의를 구하고, 합병에 찬성하지 않는 주주에 대해 두터운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M&A 과정에서 일반주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합병의 이유와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 및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 판단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등 합병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해 5월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하였고, 이를 기초로 기업, 투자자,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첫째, 합병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중요한 의사결정 내용과 이사회 판단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말하였다. 둘째, 외부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합병가액 산정에 관여한 기관은 외부평가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외부평가기관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준수하도록 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서는 외부평가기관 선임시 감사위원회 의결 또는 감사 동의를 의무화한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방법 규제를 개선하되, 합병가액의 공



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평가를 의무화한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제도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병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다.

현재 합병시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등이 공시되고 있으나, 합병진행배경 등은 간략히 기재되어 일반주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일반 주주도 합병 진행 경과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구체화한다.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합병의 추진배경, 합병 상대방 선정 이유, 합병 진행시점 결정 이유 등 주요 의사결정 사유를 공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 내용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이사회 논의내용이 공시되지 않아 지배주주에게 편향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일반 주주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합병 목적, 합병가액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 그 사유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이 포함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의무화 한다. 합병 진행과정에서 이사회 책임성이 강화되며, 합병 과정 및 합병가액의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외부평가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 합병 등의 경우에는 외부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외부평가 기관에 대한 행위규율이 미비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객관적이고 내실 있는 외부평가가 가능하도록 외부평가기관의 행위규율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합병가액 산정과 평가의 동시수행을 금지한다. 기업에게 특정 합병가액을 권고하거나 산정방법을 제시하는 등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참여한 기관을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통해 외부평가기관이 스스로 산정한 합병가액에 대해 적정성을 평가하는 자기평가 위험을 제거하고, 이사회가 책임 있게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아울러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기업의 실제적 가치를 평가한 결과’로 명확하게 정의하여 기업가치로서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외부평가기관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평가업무 수행 후 평가자 및 품질관리검토자가 해당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평가의견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외부평가기관은 기업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내부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더 큰 만큼,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감사위원회 의결 또는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다만, 합병 결정에 대한 공시 이전 외부평가기관의 선임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불공정거래 등 시장혼란이 우려되므로, 외부평가기관 선임 사실은 합병결정 이후 공시되도록 공시서식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외부평가기관에게 독립적인 업무 수행 환경을 제공하여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

셋째,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개선한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기업 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기업구조 재편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하여 합병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에도 대조된다. 앞으로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서는 합병에 대한 공시 강화, 외부평가 의무화 등을 전제로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산식\*을 의무화하지 않고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합병가액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비계열사간 합병시 제3자가 합병가액을 검증하도록 외부평가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상장사의 경우, 기준시가를 다음 방식에 따라 결정 :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 계약일 중 앞선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후 산술평균

한편,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대등한 당사자 간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자율화하는 경우 대주주 위주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일반주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번 규제 개선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금년 3분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 참고

## 주요 Q&A

### 1. 금번 M&A 제도개선의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 M&A는 기업의 성장·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금리인상 등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
  - 일반주주의 입장에서 M&A는 기업 지분가치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바, 충분한 일반주주 권익보호\*가 필요
    - \* 현재 ①합병 진행과정에서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②합병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두터운 보호장치 마련
- 그러나 현재 합병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사회 책임성도 약하다는 지적



- 지나치게 경직적인 합병규제가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측면도 존재
- 따라서, 공시 강화, 이사회 책임성 제고, 외부평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
  - (공시 강화) 합병 진행배경 등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항목 구체화
  - (이사회 책임성 제고) 합병 목적, 합병가액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 그 사유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를 공시하도록 의무화
  - (외부평가제도 개선) 합병가액의 산정·평가 동시수행을 금지하고, 품질관리규정 마련을 의무화하여 외부평가의 품질 제고
    - 특히,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외부평가기관 선임시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동의(의결)를 의무화
      - \* 상법은 상장회사 감사·감사위원 선임시 개별주주 의결권 범위를 3%로 제한
- 또한,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합병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원활한 합병을 지원할 계획

<b>2.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서만 완화하는 이유는?</b>
--

- 비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대등한 당사자간 거래라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 협상을 통해 기업의 진정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완화
  - 다만, 이 경우에도 합병가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외부평가를 의무화\*
    - \* 현재는 상장기업-비상장기업 간 합병에 대해 원칙적으로 외부평가 의무화
  - 이를 통해 합병 등 기업의 자율적 기업구조재편 수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그러나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합병가액 산정 규제 완화시 대주주 위주의 의사결정 등으로 인해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함